

碩士學位論文

勤勞所得者の 公平課稅意識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 營 學 科



1997년 12월

# 勤勞所得者の 公平課稅意識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高 富 彦

許 禎 根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 年 12 月

許禎根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經營學博士 高 成 孝 ㉞  
委 員 經營學博士 高 富 彦 ㉞  
委 員 經營學博士 金 斗 元 ㉞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 年 12 月

---

An Empirical Study on Taxpayer Perceptions of Fairness

JEONG-KEUN, HUR

(Supervised by professor Bu-Eon K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 目 次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1절 공평성 기준으로서의 분배 정의 .....	5
1. 공평성의 결정요인과 인식기준 .....	5
2. 분배정의의 판단기준 .....	9
3. 분배정의상의 공평성 원칙 .....	12
제2절 조세공평성 연구의 행동론적 접근 .....	15
1. 공평성의 척도로서의 조세 .....	15
2. 조세 공평성 연구의 행동론적 모형의 구조 .....	23
3. 조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행위의 관계 .....	2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28
1. 조세공평성 연구모형의 분류 .....	28
2. 선행 연구모형 분석 .....	33
제 3 장 연구 설계 .....	35
제1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	35
1. 연구모형 설정 .....	35
2. 변수의 선정 .....	36
3. 변수의 개념적·조작적 정의 .....	37
4. 변수의 명칭 .....	40

제2절 연구가설의 체계 .....	41
제3절 연구조사방법의 선택과 절차 .....	42
1. 조사기관과 그 절차 .....	42
2. 분석기법 .....	42
제 4 장 가설검증 및 연구결과 .....	43
제1절 조세 공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지도 .....	43
1. [가설 I] 검증결과 .....	43
제2절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 .....	48
1. [가설 II] 검증결과 .....	48
제3절 조세 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	50
1. [가설 III] 검증결과 .....	50
제4절 변수별 영향요인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	52
1. [가설 IV] 검증결과 .....	52
제 5 장 결 론 .....	59
참 고 문 헌 .....	62
설 문 지 .....	64



## 表 目 次

〈표2-1〉 조세회피와 조세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	33
〈표3-1〉 설문지 회수 현황 .....	42
〈표4-1〉 연령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	44
〈표4-2〉 납세전 소득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	44
〈표4-3〉 직업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	45
〈표4-4〉 납세경험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	46
〈표4-5〉 세무지식과 인지도간 차이분석 .....	46
〈표4-6〉 세법준수와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	47
〈표4-7〉 납세전 소득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 차이분석 .....	48
〈표4-8〉 직업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차이분석 .....	49
〈표4-9〉 세무지식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차이분석 .....	49
〈표4-10〉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0
〈표4-11〉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1
〈표4-12〉 학력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3
〈표4-13〉 납세경험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4
〈표4-14〉 고소득자의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정도 .....	54
〈표4-15〉 학력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5
〈표4-16〉 세무지식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조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6
〈표4-17〉 세법 준수 정도별 공정성 영향요인의 소득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7
〈표4-18〉 납세경험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조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58

## 그림 目次

〈그림 2-1〉 공평성 이론의 단계 .....	8
〈그림 2-2〉 조세회피 행위론적 모델 .....	26
〈그림 3-1〉 연구모형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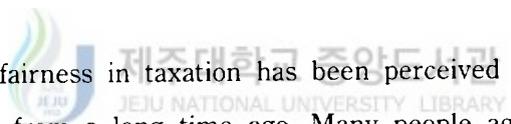


---

## SUMMARY

### An Empirical Study on Taxpayer Perceptions of Fairness

Jeong-Keun, Hu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issue of fairness in taxation has been perceived as an important goal of a tax system from a long time ago. Many people agree that tax systems should be fair, which is evident even in the regulations on taxation by Adam Smith.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level of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in view of behavioral sciences and to promote taxpayer compliance as a result of operation fairness of the tax system.

The standards of taxpayers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may vary and bring pressures to social and psychological situations and to the interests of different groups. However, management of the tax systems with the concurrence of the majority of taxpayers, both morally and philosophically, will benefit the

---

nation enoumously.

Sampling five autonomous variables on taxpayer perception of fairness of taxation, I tried to analyze their influences on the fairness in income structure. Demographical variables were selected in three environmental variables.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irst, let us see the level of perception on influential factors as to the fairness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arithmetical mean, irrespective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degree of imbalance in income types, or the amount of tax, the tax law is perceived as extremely complicated. However, differences appear depending on demographical variables.

It is found that people over 30 years old, those whose income exceeds 10 million won per annum including tax, those engaged in private companies, those who have worked more than 10 years in a row, find that taxes are high.

Also, income earners over 10 million won, those engaged in private companies, those who don't trust the tax law, perceive the government benefits poor. Also,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private sectors are comparatively more eager to avoid paying tax and their perception of the level of complication of the tax law higher than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public sector.

Second, regardless of demographic factors, the level of fairness perception of income tax seems to be average, but the level of fairness perception of the tax structure seems to be low. However, demographic variables can make slight differences. The income earners over 10 million won per annum, those engaged in private companies, people with low knowledge on tax affairs have a relatively poor perception of fairness of income tax. The level of perception of unfairness of income structure appears comparatively higher with income earners over 10 million won, those engaged in private companies, and people

---

with high knowledge of tax business.

Third, the less the tax is and the lower the level of unfairness in income types, the more fair the taxpayers perceive the income tax. Also the less amount of tax is and the more the government benefits are, the more fair they perceive the income structure.

Fourth, let us the perception by academic careers on the influences on fairness in income tax from influencing factors on fairness of income tax. College graduates perceive the lower the amount of tax is, the more fair the income tax. They also perceive the tax law as more complicated. High school graduates think the income tax is more fair when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disparity of income types is lower.

The limits of this research include a limit in measuring variables of quality, which is inevitable in the surveying method in positive analysis,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due to the limited surveyed area of Cheju, and a limit of generalization, especially since the features of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were not considered as variables in the models of this study.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회계는 기업활동이나 개인의 영업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며 회계기준에 근거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과학적 운영을 하게 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는 개별경제인 기업의 사적 계산수단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사회질서 형성요인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도구로써 사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조세문제에 관해서도 사회적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조세제도의 역할은 그 나라의 역사·정치·문화·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의 역할이나 이념은 크게 조세부담의 공정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수입의 확보, 징세의 편의 등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수입의 확보나 경제개발 지원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조세부담 측면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었다.

조세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조세제도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어 왔고, 이는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세무(taxation)에 대한 규범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세제도가 공평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 즉 제공받는 공공서비스(공공재)에 대해 각자의 몫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그 기준과 공정성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조세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소송 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지나친 행정간섭,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과세행위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조세행정의 풍토조성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세의 불공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공평성 인식성향의 증대에 따른 납세의식의 침체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구조의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 공평성과 납세회피는 관련이 깊어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납세회피가 증가되는 것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고, 조세구조(tax system)가 공정하게 변화되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어 성실납세가 증대될 것이다.

조세구조는 동태적인 행동론적 구조(dynamic behavioral system)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일상생활 및 도덕적 행위 전반에 걸쳐 직접·간접으로 세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성실납세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법은 이와 관련된 행동적 효과를 등한시한 채, 규범적인 동기 내지는 특정 이해집단의 편익에 따라 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해서 불신을 갖을 가능성이 있고, 조세저항, 조세회피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과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법은 제정되기 전에 세법에 의해 야기되는 행동적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의 세법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수용되고 있지 않거나, 세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우, 조세저항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 세법의 개정 및 폐지를 논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이 납세자의 행동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법들의 경우 세무정책이 초래할 행동적 측면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입안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 등 납세자의 행동적 상황은 조세정책의 입안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평한 세제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방향으로의 세법 입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평성에 대한 인식기준이 도출되어야만 한다. 선행연구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중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공정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또한 垂直的 公平(vertical equity)과 水平的 公平(horizontal equity)의 위배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연구의 행동론적 차원에서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공평성의 영향요인을 다차원적인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근로소득자의 조세 공정성 영향요인 및 소득세의 공정성,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규명하고, 둘째, 이들 영향요인이 소득세 및 조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한편, 셋째, 근로자의 특성별 영향요인과 소득세 및 조세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조세저항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경향을 줄이고 조세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키게 하는 조세행정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조세에 대한 인식의 연구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실증적 연구로써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실제소득자료에 의한 회귀분석연구 및 이론모형에 의한 분석적 연구의 4가지 범주로 구성<sup>2)</sup> 된다.

1) B. Bradley, *The fair tax*. New York : Pocket Books, 1984.

2) B. R. Jackson & V. C., Millo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on Literature*, 1986, pp. 125-165.

S. A. Madeo, A. Schepanski and W. C. Uecker, "Modeling Judgment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Vol. No. 2, April, 1987. pp. 323-342.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survey research)에 의한 가설검증 방법을 채택하였다. 현행 세법의 공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세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 공정성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납세자 200명의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측정단위는 항목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과학 연구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1.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공정성이론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 공정성 인식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조세 공정성의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채택된 독립변수로서는 세금의 양, 소득유형불균형, 납세회피욕구, 세법복잡성, 정부혜택 등 5개이고, 5개 독립변수들이 2개의 종속변수인 소득세의 공정성,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환경, 납세자 유형, 소득수준의 3개 환경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선정되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4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3. 가설검증을 위해 통계 자료처리 방법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 다중 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의 통계기법을 개인용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PC<sup>+</su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요약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발전 전망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공정성 기준으로서의 분배정의

#### 1. 공정성의 결정요인과 인식기준

공평성(fairness, justice, equity)에 대한 개념은 문명의 시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서구문화의 건전한 사회를 위한 시금석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기업이나 교육계, 보건계, 및 정부와 같은 다양한 집단내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인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조직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소수민족과 여성집단에 의한 최근의 요구들은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공정한 대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이론가들이 이론<sup>3)</sup>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공정한 보수의 결정 모델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들이 직무에 공헌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성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비교의 개념을 포함하여 종업원들의 공정한 대가는 투입(기술, 교육, 노력등)이나 산출(임금, 승진, 직위등)이 비교되어진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셋째, 종업원들이 스스로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인지할 때-투입·산출의 왜곡이나, 변경으로써 혹은 그 조직의 이탈으로써-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3) 권영모, 남세자의 조세 공정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4. p.5.

공평성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공평성 인지의 실태와 불공평성의 인식에 대한 해결의 시도 그리고 불공평성 인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영향의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어 있다.

사회과학에서 공평성이론은 서로 다른 상황하에서 분배정의 원칙이 규정되고, 이러한 원칙에 의해 배분되어진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Aristotle은 입력/출력에 근거한 공평성 이론을 개발하였고, 이 이론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공정한 배분(노력에 비례한 소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심리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이 효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의해 정의되고 평가된다면 적용상에 문제가 따른다.

공평성 이론에서 공평한 관계는 집단구성원 상호간에 상대적 입력으로부터 동등한(또는 공평한) 이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 존재하는 것<sup>4)</sup>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소득은 노력에 비례해서 가득될 때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담스(J. S. Adams)는 자기의 投入과 產出의 비율을 자기와 관련이 있는 타인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느낄 때 불공평성을 느끼며, 이로부터 공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으로 인지부조화이론(認知不調和理論)을 동기유발과 연결시켜 공평성이론(equity theory)을 체계화하였다. 여기서 불공평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투입, 산출, 준거인물 등을 들고 있다.

(1) 투입(input) : 상대방(회사)으로부터 보답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교육, 경험, 훈련, 직무에 대한 노력,

4) E. Walster, E. Berscheid & G. W. Walster,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Feb., 1973, pp. 21-43.

T. S. Adams. "Toward and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7, 1963, pp. 422-436.

사회적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산출(output) : 투입에 대한 대가로 개인이 얻게되는 수익이나 급여, 내적인 보상, 열등한 작업조건, 단조로움, 불확실성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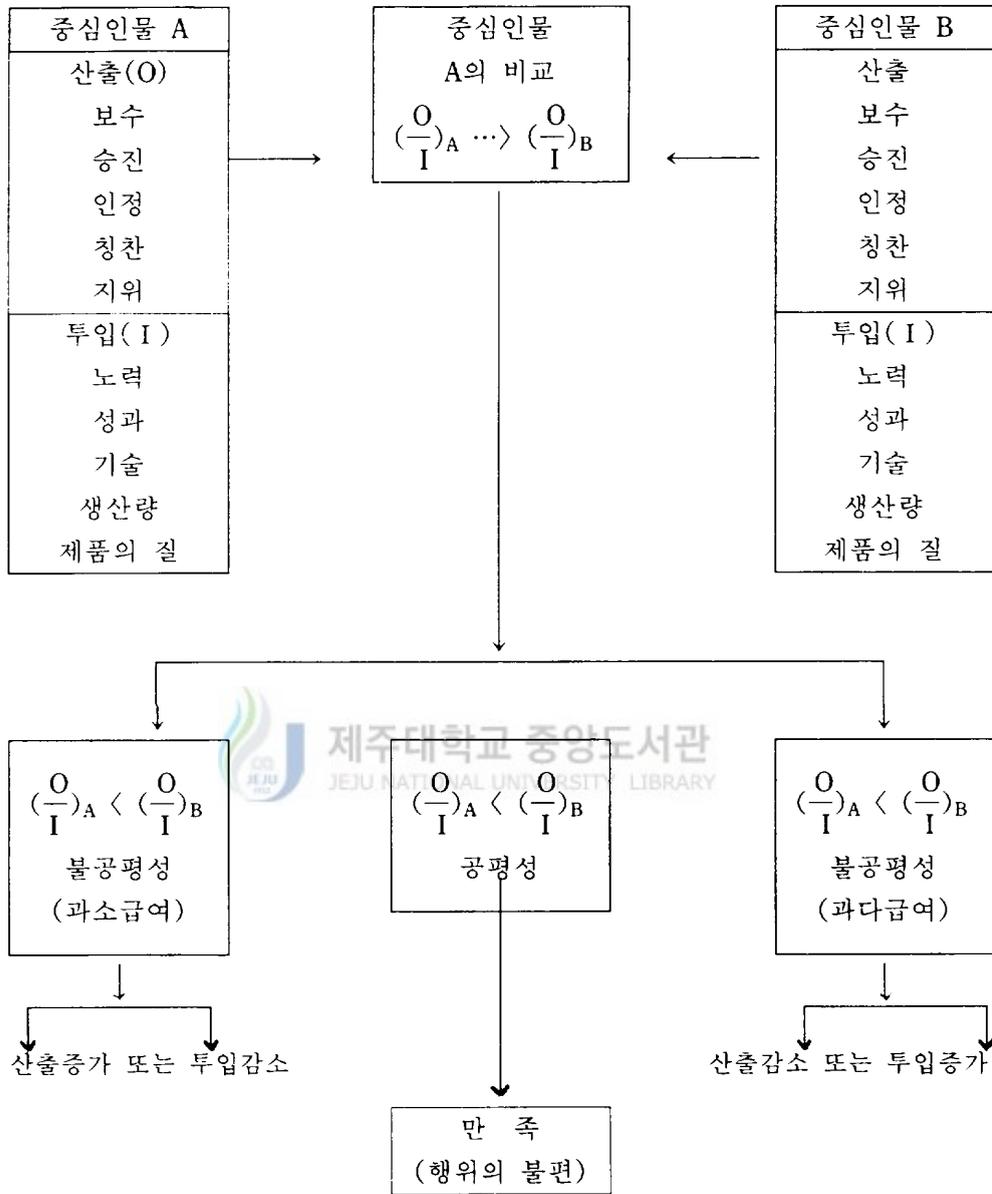
(3) 투입과 산출 : 투입과 산출이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규범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관적인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평성과 불공평성의 지각은 대부분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 準據人物 : 준거인물이란 자기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을 비교하는 대상인물을 말하며, 대개 자기의 주위에서 자기의 투입요소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을 적용하여 공평성의 인식기준을 설정하고 이론의 단계를 요약하여 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공평성 이론의 단계



자료 : 권영모, 전계논문, p.8

## 2. 분배정의의 판단기준

### 1) 분배정의 이론

일반적으로 조직사회는 분배갈등을 조정할 공정한 분배원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배의 공평이나 정의의 측면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경제적 후생이 효율성 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도 분배의 공평 문제가 기피되어온 것은 도덕적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분배정의론을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분배 현실을 염두에 두고, 각 정의론이 함축하는 현실적 의미를 파악하여 윤리학과 경제학 그리고 회계학이 만나는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철학 또는 사회학에 있어 공정분배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공로주의와 평등주의의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에 의해 논의되어 있다.

Aristotle로부터 비롯된 공로주의는 개인의 노력에 소득이 비례하여야 한다는데 그 원칙을 두고 분배주의를 논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공평(equity) 이론가들도 이 공로주의의 원칙을 분배정의에 적용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서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sup>5)</sup>

한편 Platon으로부터 비롯된 평등주의의 개념도 역시 분배정의 및 절차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최종 소득이 동일하게 분포되거나 또는 소득의 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똑같은 참여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분배의 공정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의 분배원칙은 기본적으로 상반된 입장에서 분배정의를 해석하게 된다. 공로주의는 각 개인의 소속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배를 주장함으로써

5) T. S. Adams, "Toward and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1963, pp. 422-436.

이는 당연히 공적에 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한편 근래의 연구자들은 가급적이면 양 극단을 혼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두 기준들이 사회 조직내에서 혼재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다양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상황적 여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연령별, 성별,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정의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진다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조사대상 다수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듯 하다. 두 원칙이 혼용되어 분배정책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두 이론의 실증연구결과 공로주의 또는 평등주의가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는데<sup>6)</sup> 이는 사회 전체의 공정분배에 대한 개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로주의자들은 공평을 강조한 분배정책 및 자원분배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을 강조하였고 반면에 평등주의자들은 필요기준에 의한 동일한 분배를 공정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평성에 대한 단일차원의 효용으로서의 설명되어질 수 없으므로 각 개인의 가치 척도는 다차원적 개념에 의해 파악 되어져야 할 것이다.

## 2) 분배정의의 판단기준

경제적으로 공정한 절차나 분배개념이 대중의 만족여부를 결정한다는 논의는 설득력있는 기준이다.<sup>7)</sup>

그러나 공평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역학관계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내용이 잘 파악되어 있으나 공평성에 대한 판단, 즉 공평성을 인식하는 주체인

6) M. J Lerner, "The Justice Motive : Equity and parity among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 1974. pp. 539~550.

7) T. R. Tyler, & Folger, R., "Distr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of satisfaction with Citizen-Police Encounters", *Basic and Applied Psychology*, 1, 1980, pp. 281-292.

개인들의 행동적 측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공평성에 대한 행동적 연구가 6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개인의 목표에 대한 공정한 판단기준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공평성 판단은 사회의 규범적 목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평(equity), 평등(equality), 또는 필요(need)의 원칙에 근거한 분배가 생산성, 사회적 조화 또는 인본주의적 목표와 일치할 경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분배에 대한 규범적인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관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sup>8)</sup>.

분배정의의 개념은 개인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여건 및 재화의 분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은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심리 및 사회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해야 균형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관점에서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혜택 및 손실, 보상 및 비용 등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다각적으로 각 개인에게 복지의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p>9)</sup>

(1) 가치의 공평성 : 분배형태를 지배 (2) 규칙의 공평성 : 가치를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형태 (3) 시행방법의 공평성 : 규칙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 (4) 의사결정 절차의 공평성 : (1) - (3)의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방식, 이상의 모든 항목이 포괄적으로 조화되어 정의로운 분배여부를 결정 짓는데 판단기준으로 적용된다.

분배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노력에 비례한 소득(aristotelian rule) (2) 동일한 소득 (3) 필요기준에 따른 분배 (4) 능력기준에 따른 분배 (5) 노력기준에 따른 분배 (6) 실적에 따른 분배 (7) 외부적인 혜택이나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제공 (8) 자

8) J. Greenberg, "Protestant Ethic Endorsement and the Fairness of Equity Inpu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1979, pp. 81-90.

9) 권영모, 전제논문 p.11.

유시장 시스템에 의한 수요공급에 따른 분배 (9) 생활필수품의 필요성에 따른 분배 (10) 호혜(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른 분배 (11)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 되도록 하는 분배 등이 기준들은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당연한 우선성이나 순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최저생계비 보장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위험도 있다. 분배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여러 가치들은 이상과 같이 서로 상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가치를 내세우기가 어렵다.

결국 공로에 따른 분배, 동일한 분배, 필요에 의한 분배로 귀결된다. 이 기준은 규범적인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가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둘 수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sup>10)</sup>

- ① 경제적 생산성 증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조하는 관계-노력에 따른 분배
  - ② 명량한 사회 분위기 유지 및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조관계-동일한 분배
  - ③ 개인적 발전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는 협조관계-필요에 따른 분배
-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이러한 협조적 여건을 전체조건으로 할때 특정집단에서 집단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가치기준이 도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3. 분배정의상의 공평성 원칙

사회 구성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이 정의(justice)이며, 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사회구성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정의를 경제적이익의 분배의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라고 한다.

10) M. J. Lerner, *op. cit.*, pp. 539-550. M. Deutsch, *op. cit.*, pp. 137-150.

분쟁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각자의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달라서 자신의 이익을 더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고하면 공정한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 할 수가 있다.

각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의에 관한 사고의 핵심인 것이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 공리주의의 '불편부당하며 동감적인 관망자'(impartial sympathetic spectator), 그리고 동양의 '易地思之' 등이 모두 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배정의를 분배의 공평성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구체적 이해관계를 떠났을 때에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평성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롤즈의 분배정의론<sup>11)</sup> 및 고전적인 사회계약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기여도, 기회균등, 기본재 충족의 원칙이 모두 충족되면 분배정도의 내지 분배의 공평성이 충족된다고 말한다<sup>12)</sup>

#### 1) 기여도(contribution)의 원칙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이같은 논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체제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경제체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생산에의 기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므로 임금 뿐만 아니라 이자, 임대료, 이윤 및 지대의 재산소득까지 포함한 모든 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주택, 증권과 같은 자산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생산에 기여

11)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2) 이재율, 분배적 정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p. 142.

한바 없이 단지 소유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특히, 공급이 증대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상승은 공장, 건물, 도로 등 생산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의 공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을 방해한다. 이 원칙은 또한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에 의한 음성수입도 부정한다. 이러한 음성수입들도 모두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생산을 오히려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2) 기본재 충족(needs)의 원칙

기본재 충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적 조건인 기본재(basic needs)는 최소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재는 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만약, 기여도의 원칙만을 따른다면, 기본재의 획득에 필요한 만큼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재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은 사회의 생산물 분배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본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절대빈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치와 향락을 쓰일 생산물은 기본재의 공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본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의 생산력에 주로 좌우 될 것이다.

이 원칙에서 기본재의 수준은 생산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생존에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와 의료를 말하며, 후자의 기본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및 교통을 포함 할 것이다.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전자로, 생산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후자로 기본재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3) 기회균등의 원칙

이 원칙은 민주사회에서의 기회균등 원리에 바탕한 것으로 모든 경제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기여도 원칙에 의한 차등분배가 공평한 분배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생산에 기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차별적인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결과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소득에는 임금이라는 근로소득과 이윤, 이자, 지대 및 임대료의 재산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산소득은 부모로부터의 상속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균등은 교육과 상속에서의 기회균등을 의미한다. 분배의 공평성이란 결국 위의 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조세 공평성 연구의 행동론적 접근

### 1. 공평성 척도로서의 존재

#### 1) 규범적 조세공평이론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解釋適用上 公平)는 원칙이다.<sup>13)</sup>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두고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조세입법원리가 성립된다.

조세법의 입법과정에서의 조세평등주의는 그 이념을 세법 질서속에 담는 노력

13) 최명근, 세법구조개설, 1992년 세무학 워크숍 교재, 한국세무학회, p. 18.

으로서 세 부담의 배분기준을 소득·부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에 비례하도록 할 것인가(이익설 : 혜택기준) 아니면 경제적 부담능력=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배분할 것인가(능력기준) ?, 또는 소득재분배 정도를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인가? 등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이념이라면 세법의 집행과정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세법체계를 그 공평부담의 이념이 실현되도록 해석·적용하는 것이 공평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일 것이다.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정의로 나누는데, 평균적 정의는 각자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결합하는 이익사회(gesellschaft) 안에서의 정의이며, 이는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모두 1대1의 대등한 인격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 정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질서의 근본이념이 된다.

배분적 정의는 개인적 가치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長幼, 남녀, 빈부 등)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차등이 있을 경우에 합리적 차별을 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의 정의이며 공공생활을 규율하는 질서의 근본이념이다. 따라서 권리의 향유·영예·납세 등과 같이 국가와 국민, 단체와 그 구성원간의 관계를 조화시키는데 공헌하게 된다.

위 두 정의 개념중에서 조세정의에 관련되는 배분적 정의는 세법에서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각자(같은 경제력을 가진 개인 또는 가계)는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비례과세를 논리화 하였다. 이러한 공평의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하여는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을,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보다 가벼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는 능력설에 이론적 기초를 두면서 누진과세를 정당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정의는 평균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공평의 개념에 기초를 두면서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공평의 개념이며, 현대의 조세는 수평적 공평에 그 기초를 두면서도 수직적 공평에 그 중점을 더 무겁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정의로운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공평성(equity)이다. 정의라는 개념에 있어 공평성이 필수적인 요소로써 조세구조는 이러한 공평성에 바탕한 분배정의가 얼마나 잘 고려되어 있는가에 따라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구조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 각자의 공평(equity)에 맞는 조세부담의 분배가 보장 (2) 경제에 대한 자의적 간섭의 배제, 특히 초과부담의 배제 (3) 비효율 경제부문의 치유효과 (4) 원활한 공공정책 수행 (5) 조세행정의 편의와 납세자의 이해 (6) 납세성실도(tax compliance)의 고양 등이다.

공평(equity)은 조세구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며 납세자들도 정부에 대한 공평한 몫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평한 몫에 대한 개념이 납세자들 사이에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납세자 전반에 걸쳐 수용될 수 있는 조세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에 맞는 과세방법의 운용과 특정 과세방법의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납세후 소득의 분포 형태에 대한 납세자의 호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세방법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납세후 소득의 공평유지도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 2) 조세공평배부론의 체계

전통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정척도로 외형적 조세(explicit tax)가 사용되어져 왔다. 외형적 조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말한다.

외형적 조세에 대한 조세공평배분학설은 재정학에서 효익원칙과 능력원칙 두 가지 접근방법<sup>14)</sup>이 있다.

첫째, 효익원칙(benefit principle)이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보호의 수혜자로서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각 납세자가 공공 서비스로부터 받는 효익의 정도에 따라 조세가 배분되어야 공평하다고 하는 원칙이다.

즉,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효익에 따라서 납세해야만 한다는 기준으로 조세정책 및 지출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 원칙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각 납세자들이 받는 혜택이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은 조세부과는 지급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들 자신의 지급능력에 따라 정부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즉, 능력이 같으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고(수평적 공평성)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납세자들은 세금을 다르게 납부해야 한다(수직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구조를 정당화시킨다. (즉, 보다 많은 수익을 갖는 사람들은 지급능력이 보다 크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지급능력 접근방법은 세출정책과 관련이 없고, 세입 정책이 지급능력원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급능력을 측정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는데 척도로써 일반적으로 소득이 이용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정당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조세이론가들은 납세자들의 지급능력의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납세전 경제적 소득을 참고하고 있었다.

미국 내국세법령(IRS)에서는 불공평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의 조세감면, 면제, 공제, 비과세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5)</sup>

14) 권영모, 전계논문, p.18.

15) 권영모, 전계논문, p.19.

소득 이외에 다른 요인을 인식하면 공평성의 차원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질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소득이 같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다르게 납세처리를 하는게 보다 공평하다. 여기서 공평성은 두 납세자가 똑같은 지급능력을 갖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지만 이와 같은 두 명의 납세자들이 서로 다른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전소득은 가족의 재정적 상태를 감안하여 지급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규정(부양가족에 대한 필요경비적 공제항목등)이 어떠한지 달려 있다.

이와같이 조세이론에서 지급능력을 평가하는데 소득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특정 납세자들이 차별적으로 납세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많은 이유가 될수도 있다.

이는 현행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예시하는 것으로, 조세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특례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납세자들은 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의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sup>16)</sup>에서 복잡성과 공평성의 인식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납세자는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조세이론이나 정책입안가들은 복잡성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주장한다.

16) V. C. Milliron,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ong Research*, Vol. 23, No. 2, Autumn, 1985, pp. 794-816.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제5집, 1993.

공평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세자의 능력원칙, 혜택원칙에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 ① 능력원칙

능력원칙은 각 납세자가 자신의 지불능력에 준하여 세금부담을 가지는 것을 공평하다고 본다. J. S. Say 및 J. S. Mill은 세입구조는 세출구조와는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각 개인은 공공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과는 무관하게 능력에 기준해서만 국가에 대한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능력원칙에서는 세출은 통합적 개념으로만 고찰되고 따라서 공공 재정분야의 지출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투입 및 산출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에게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정책은 대부분은 지출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실시하기에 용이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공평원칙(equity rule)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혜택원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인별 공정한 부담을 설정하고 또한 세입과 세출의 기능을 두루 고찰함으로써 이론 분석적 입장에서는 우위에 있기는 하나 재분배기능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능력적 접근방법에서는 재분배 기능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대중이 인식하는 공평에 보다 현실감을 주는 조세정책을 펼 수 있다.

#### ② 혜택원칙

혜택원칙은 공공서비스를 받는 혜택에 비례해서 조세부담의 양이 결정되는 세금구조가 공평한 조세구조가 된다.<sup>19)</sup> 즉, 공평에 맞는 세금구조는 세출구조에 기준하여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혜택기준은 세입을 다루는 조세정책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세출정책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능력원

17) 변용환, 전계서, p. 28에서 재인용.

18) R. A. Musgrave and P. B. Musgrave, *op. cit.*, p. 215.

19) 조세구조에 있어 혜택원칙은 17세기의 Locke 및 Hobbs 그리고 Bentham, Adam Smith 등의 주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칙의 세입만을 고려한 공평원칙에 비해 논리적 포괄성을 띠고 있다. 혜택원칙은 인센티브를 고려할 공공재의 비용부담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 소외빈곤 계층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역진적인 세금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등에 혜택원칙을 사용하기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고 고속도로 통행료, 텔레비전 시청료 등 특정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한정해서만 이 원칙의 적용도 비교적 용이하다.<sup>20)</sup>

이러한 능력원칙과 혜택원칙은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도 어렵고 실무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다. 혜택원칙이 실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에 대한 특정 납세자의 혜택이 알려져야만 하므로 종합소득세 등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덜 복잡하나 이 역시 지불능력(소득, 소비) 측정에 대한 기준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두 원칙 모두에 세부정책의 전체적인 기능이 고려되어 있지가 않다. 혜택원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과정에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이상적인 논리는 있지만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다룰 수가 없다. 즉, 혜택원칙은 사전적으로 분배상태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이상적인 가정하에서만 공평(equity)의 원칙을 논할 수 있다.

### 3)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과세방법의 종류에 따라 납세후 소득이 변하므로 납세후 소득의 분포를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공평을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납세후 소득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과세공평을 논하는 경우에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sup>21)</sup>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원칙의 현실 적용을 위해서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함께 고려

20) J. Simon and C. Novers, *The Economics of taxation*, Philip Allan : Oxford, 1978, p. 77.

21) 동일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차별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누진세 또는 역진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되어 두 개념 모두가 동일대우(equal treatment)의 원칙에서 조화되어야 한다.<sup>22)</sup>

불공정한 세금구조일 경우 조세저항에 의한 조세회피가 우려되고 공평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경우 복잡해지는 과세구조에 의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평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준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sup>23)</sup> 따라서 과세후 소득재분배 과정에서도 원래의 부의 순위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한다. 즉 납세전이나 납세후나 납세자 간의 상대적 위치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온 수직적 공평에 비해 수평적 공평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가지 공평개념을 독립된 개념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면 이상적인 조세공평 시스템을 구상하기가 어렵고 상호 연관되어 어느 한쪽에 우선권을 주어 불균형적 상태에서 공평을 논할 수는 없다. 조세 공평성과 관련한 납세자의 불만은 이상의 두 가지 공평 중 어느 하나만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직 및 수평적 공평을 함께 고려하여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별 효용분석등의 단일 속성만을 사용한 연구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수직 및 수평적 공평이 함께 고려되어 공평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소득원의 종류, 나이, 부양가족수, 사회적 위치 등의 수많은 현실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여러 변수를 이용한 연구가 조세 공평성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으로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2) 수평적 형평에 비해 수직적 형평은 그 개념이 다소 자의적이다. 즉, 동일하지 않은자들 사이에 과세액을 달리한다는 개념은 부자와 빈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현실적 적용이 모호하다. 반면 수평적 형평은 구성원들 사이에 동일효용 스케줄을 적용하면 되므로 그 개념정립이 명쾌하다.

23) 동일한 위치는 소득뿐만 아니라 미실현 자산소득, 감가상각비 등을 가감한 임대수입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 2. 조세 공정성 연구의 행동론적 모형의 구조

### 1) 납세자의 윤리와 태도

세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호환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강제적 부담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성공적인 세무행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필수조건이 된다. 원천징수 및 인정과세 제도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세윤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자율적인 조세신고 시스템일 경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즉, 공공정책, 세무감사, 세금의 적정분배, 조세행정의 능률과 공정 등이 납세자의 태도를 결정짓고 또한 상호 호환적으로 납세자의 태도가 기존 세무제도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납세자중 상당수가 자신들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세무당국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적정수준의 징수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세윤리(tax ethics)란 납세자들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납세자들을 지배하는 규범을 뜻하며, 우선 각 납세자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규범적 태도를 결정짓게 하고 이는 곧 행동적 차원에서 세법에 대한 납세 성실도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조세윤리의 행동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요약된다.

- (1) 조세관련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수준
- (2) 세무감사와 피감사 경험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 (3) 계층간 조세분담의 적정수준
- (4) 전반적인 조세공평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 (5) 특정세금의 공평문제에 대한 태도
- (6) 세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납세자의 행동적 관점들을 살펴볼 때 조세공평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목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납세자의 조세 공정성 인식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납세자의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는 조세공평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다.

## 2) 조세회피 이론

조세회피에 대한 행동적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와 회계학의 관심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에서<sup>24)</sup> 회계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회계정책의 수용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회계영역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패러다임(paradigm)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조세회피에 관한 그간의 주요 연구에서는 세법의 복잡성, 조세구조의 불공평성, 세율 등을 조세회피의 주요 원인으로 들어 세법규정 제정기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제기해 왔으며<sup>26)</sup> 다양한 속성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조세 불공평성이 납세기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sup>27)</sup>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여부는 조세구조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납세자가 판단하는 방향과 관련이 깊다.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호응여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향과 관련이 깊다.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불공평성에 상당한 원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sup>28)</sup>.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것은 납세 성실도를 고양시키는 세법의 입안을 위해서는 우선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세회피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조세회피모델<sup>29)</sup>은 유용성이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수행을 하는 경제학적 모델과, 조세회피에 대한 행동적 모델이 있다. 그리

24) Wai F. Chua, "Radical Developments in Accounting Thought", *Accounting Review*. Volo. LXI, (Oct, 1986). pp. 606-632.

25) A. Belkai *Accounting Theory*, 2nd,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Orlando, 1985, pp. 434-450.

26) B. R. Jackson and V. C. Milliron,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986, pp. 125-165.

27) S. A. Madeo, A. Schepanski, and W. C. Uecker, "Modeling Judgement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Vol. LsII, No. 2. (April 1987), pp. 323-342.

28) M. W. Spicer and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June, 1980, pp. 171-175.

29) 권영모, 전계논문, p.25.

고 비경제적 변수들이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를 따른 연구<sup>30)</sup>가 있다.

### 3. 조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행위의 관계

어느 상황에서나 조세구조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은 존재하며 그 주된 이유는 조세구조가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세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때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조세 불공평에 대한 불만은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즉 현재의 세무구조에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 스스로 조세회피 등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납세공평을 도모하려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금징수 방법 이외에도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세시스템에 대한 공평개념이 납세 성실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제반 조세정책에 있어 자신이 인식하는 불공평에 대한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세회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31)</sup> 조세구조의 공평문제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구조에 대한 불만이 납세회피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sup>32)</sup>

조세심리학에서 Lewis는 조세회피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상세하게 고려하여 경제적, 행동론적 차원을 포함한 정교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Weigel, Hessing & Elffers(1987)은<sup>33)</sup> 자극과 규제에 의한 조세회피에 변수들을 분류하여 조세회피모형을 개발하였다. 자극이나 규제를 사회적 환경변수와 심리적 환경변수로 분류하고, 조세회피의 영향 변수로 사회적 충동, 사회적 규제, 심리적 자극, 심리적 규제를 들고 있다. 여기서 불공평성은 심리적 자극에 의해 불공평이 인식되며 조세회피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불공평인식은 여타 자극이나 규정에 의해 나타나며 특정차원에 대한 불공평성 인식이 조세회피 의도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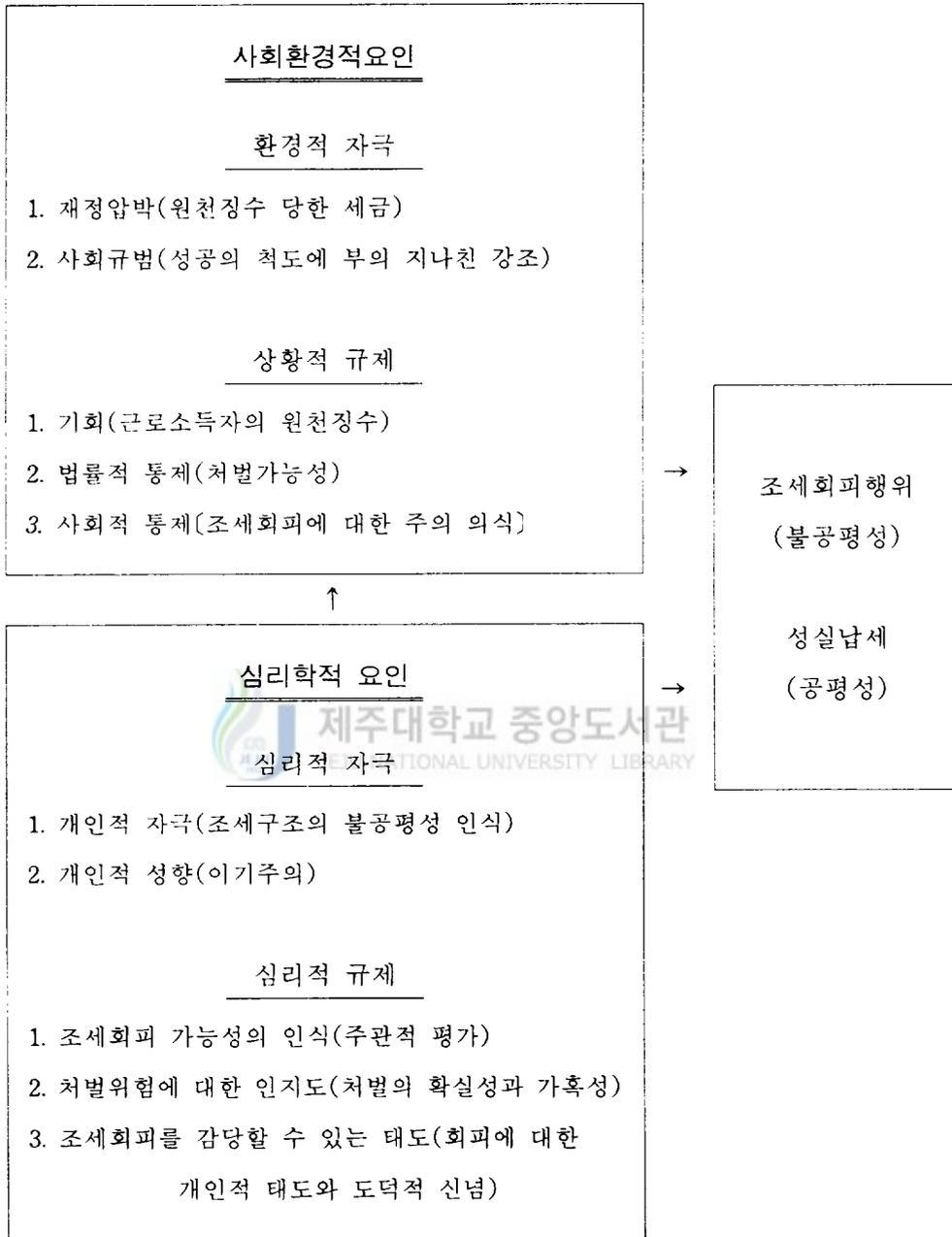
30) Muller, Hochstein, Katona, Strumpel(1969), Scholder(1970). Lewis(1979, 1982).

31) 권영모, 전계논문, p.25.

32) Y. Song and T. E. Yarbrough, op. cit, pp. 442-445.

33) R. H. Weigel, D. J. Hessing, & H. Elffers, Tax evasion research : 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987. pp. 215-235.

〈그림 2-2〉 조세회피 행위론적 모델



34) 권영모, 전제논문, p.27.

이와 같이 조세공평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공평을 찾기 위해 조세회피등의 행위가 부단히 일어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평성이 결여된 조세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감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감이 증가할수록 각종 조세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조세회피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대중들이 조세구조에 대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대중들이 납세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조세회피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sup>35)</sup> 엄청난 양의 세금이 포탈되고 있는 경우도 추정되었는데 이는 곧 조세회피가 조세정책담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구조의 공평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거래관계로서 설정해 볼 수 있다. 세금납부는 납세자가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적 시장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공공재 및 소속감 같은 정신적 서비스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의 교환관계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그러한 거래에 참여한 각 국민들 간의 공평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거래에 참여한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래방법과 다른 참가자의 거래방식 사이에 공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좌절감 또는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 당사자가 불균등한 조세정책의 수혜자이든 희생자이든 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할 수 있다. 만일 불균등이 참가자

35) 권영모, 전계논문, p.28.

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는 곧 반항적인 불만으로 연결되고, 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의무를 잘 준수하는가 하는 문제는 세무행정  
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최근 이  
문제가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문제, 소득의 합산과  
세여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공평여부, 재산소득의 누진 과세표준의 확  
충(세원포착), 인정과세지양(소득표준율제도) 조세회피자의 강력처벌, 세법은 잘  
되었으나 세무행정의 미숙, 세법상의 특례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본 경우, 과  
세되지 않은 소득의 확산, 그리고 지하경제의 엄청난 탈세 규모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조세 공평성 연구모형의 분류

이론적 조세회피 분석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납  
세자의 조세회피행위 또는 성실납세행위가 연구되었는데 이는 실제자료 분석연  
구와 조사 분석연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자료 분석연구란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자로  
부터 획득한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조  
사분석연구란 납세자의 나이, 결혼여부, 조세윤리수준, 교육수준, 거주지역, 부양  
가족수, 조세제도의 공평성등이 조세회피행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하여 면접, 전화, 질문지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 (1) Mork의 연구

Mork는 소득수준을 15구간 척도를 이용하여 소득중간값, 평균소득, 평균연금

---

36) E. Walster and G. W. Walster, "Equity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1975,  
pp. 21-43.

소득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한 소득을 실제소득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Clotfelter의 연구

Clotfelter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 ; 미국국세청)의 TCMP<sup>37)</sup>의 납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적발확률 등의 독립변수와 결혼여부, 나이, 거주지역 등 가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한계세율과 납세후소득이 조세회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납세행위와 관련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한다. 소득의 원천별로 조세회피율이 다르며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가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 (3) Witt와 Woodbury의 연구

Witt와 Woodbury는 4년간의 IRS의 TCMP의 납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수단(세무조사, 벌금, 형사처벌), 조세회피의 기회, 납세자의 태도 등의 설명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납세 성실도를 종속변수로 직업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 성실도는 중간소득층의 근로소득자가 가장 높았으며 설명변수인 규제수단, 조세회피의 기회, 납세자의 태도 등이 조세회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

37)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 일정수의 납세자에 대한 광범위한 소득 자료의 조사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대상자 선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

#### (4) Vogel의 연구

Vogel 은 스웨덴의 조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 회피성향 또는 조세회피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원천징수여부에 따라 조세회피의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으며, 조세회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과 남성과 젊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 (5) Spicer와 Lundstedt의 연구

Spicer와 Lundstedt는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 두 집단을 조세저항지수(tax resistance index)와 납세자의 조세회피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지수(tax evasion index)로 조세회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과세권자의 규제수단인 세무조사, 벌금, 납세자의 나이, 교육수준, 조세윤리수준, 조세제도의 공정성, 납세자의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조세회피자의 비율,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 등이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주관적인 적발확률이 클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낮아지고 있었으며, 총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6) Song과 Yarbrough의 연구

Song과 Yarbrough는 조세윤리지수를 작성한 후 조세회피와 조세윤리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조세회피의 적발확률이 가장 중요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중산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비례한 과세를 선호하여 혜택적 방법보다 능력적 방법이 대중에게 보다 공평에 맞는 원칙으로 인

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7) Mason과 Calvin의 연구

Mason과 Calvin은 조세회피유형인 비용의 과대계상, 소득의 과소신고, 무신고, 투자세액공제, 세법규정의 위반 등을 면접법으로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단순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다. 조세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조세회피를 한다고 인정하고 한다. 과세권자가 조세회피행위를 발견하는 적발확률의 두려움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조세회피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납세규범이 중립적이라면 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강제집행활동과 조세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규제활동을 강화하거나 납세자에게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의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납세규범이 중립적이 되면 도덕적 호소가 무력화 될 수 있다.

#### (8) Friend, Maital, Rutenberg의 연구

프리랜드, 마이탈, 루텐베르그(N. Friendland, S.M. aital, and A.Rutenberg) 등은 이론적인 최적조세회피모형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불확실한 도합수 값들을 가지고 조세회피에 대한 분석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여 게임시뮬레이션방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분석하였다.

실험적 연구로 실험참가자를 15명으로 하여 10회 실시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은 평균연령이 25세인 이스라엘의 심리학과 대학생 중 남자 7명과 여자 8명이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앞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로써 나이, 성별, 결혼여부, 인종적 배경 등의 정보를 설문지를 통하여 얻었다. 분석내용은 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세율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어떤 사회경제적 변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되는가? 조세회피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세회피의 정도가 분리되는가 그리고 별개의 의사결정인가? 과중한 가산세가 빈번한 회계감사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책인가? 라는 것으로써 분석결과가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종속변수인 적발확률·미신고소득·신고소득과 독립변수인 배경적 변수 등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소신고와 세율의 관계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빈번한 회계감사보다 과중한 가산세가 더 효과적인 조세회피 억제책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조세회피할 가능성이 많으나 과소소득신고는 더 적다고 밝히고 있다.

#### (9) Spicer와 Becker의 연구

스파이서와 베커는 시뮬레이션방법을 사용하여 조세회피와 조세불공정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남자 21명 여자 3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상대적인 세율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집단을 설정하고 그 사람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가설은 조세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조세회피는 증가하고 조세불공평성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35%가 조세회피를 하고,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25%, 그리고 세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12%가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조세 불공평성의 인식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조세불공평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세회피액은 증가하지만, 조세 불공평성으로 인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세회피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이론적 결과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 선행연구 모형 분석

〈표2-1〉 조세회피와 조세공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조세회피의 연구방법	조세공평성의 연구내용	결과
Vogel(1974) (Sweden)	자진신고항목 2개+ 다른 항목 10개= 조세윤리 측정	3개의 항목 : 납세수준 정부교환, 분배방식	비유의적
Spicer(1974) Spicer & Lundstedt(1976)	자진신고 항목 2개	조세수준, 공평성, 교환 및 분배에 관한 7개 항목	유의적
Song & Yarbrough(1978)	조세윤리 및 회피태도 측정 압세기피에 대한 태도 6개 항목	형평의 3항목	지급능력이 혜택 원칙보다 중요
Mason & Calvin(1978, 1984)	자진신고 항목 3개 이하 척도로 응답	교환변수 2개 납세자의 공 평성에 1개항목	비유의적, 소득 세에 관한 질 문
Lewis(1979, 1982) (U. K.)	16개 중 6개가 조세회피 에 관한 것임	16개 항목중 8개는 조세수 준, 부유층의 조세회피, 누 진세와 교환에 관한 것임	조세의식은 지 식과 소득이 중요 유의적
Spicer & Becker(1980)	시뮬레이션, 자진신고	공평성 측정에 상대적 세 율적용	유의적
Dean, Keenan & Kenney (1980):Keenan & Dean, (1980) (U. K)	직접 측정되지 않았음	수직, 수평공평에 관한 항 목과 회피의 잠재적 정당 성에 대한 8개항목	직접검증되지 않음. 불공평성 의 인식은 조 세회피를 정당 화시킴
Ekstrand(1980)	자진신고	개폐식 질문	검증안됨. 조세 회피에 부유층 납세자들의 개 방성
Scott &	자진신고	교환의 6개 리커트 항목	유의적

연구자	조세회피의 연구방법	조세공평성의 연구내용	결과
Grasmick(1981) Warneryd & Walerud(1982) (Sweden) Wallschutzky (1984) (Australia)	자진신고 항목 1개  표본의 1/2은 조세회피 자로 기소된 자들임(이 름이 공표되어짐)	교환과 일반적 공평성의 2개 리커트 항목  세법, 정부지출, 만족, 교 환에 대한 4가지 변수	조세지식의 중 요성 사례별로 유의적  비유의적임. 개 방형 질문들은 비회피 집단의 탈세자들의 것 임
Chang(1984)	시물레이션 : 가설적 보 고 회피보다는 avoi-da- nce에 중점	교환에 대한 1개 항목	비유의적
Milliron(1984, 1985)	시물레이션, 자진신고	형평의 제반 사항제공	비유의적
Kaplan & Reckers(1985)	시물레이션, 벌금과 납 세기피, 인센티브	일반적 공평성 정부지출의 “건전성”과 분배에 관한 3항목	비유의적 연구대상은 대 학생 비유의적, 대학원생 인지 의 불충분한 편 임
Arrington & Reckers(1985)	시물레이션 : 조세회피 의 “심각성”에 대한 평 가	중양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불충분한 편 임
Geerms &	조세회피와 자진신고 항 목 조세회피 관련 20년 간	교환에 대한 리커트 항목	비유의적
Wilmots(1985) Etzioni(1986)	조세회피 관련 20년간 역사적 자료	20년간 여론조사의 역사 적 자료	소득의 중요성 불공평 및 조세 회피 증대
Kaplan & Reckers & Reynolds(19 86)	시물레이션, 벌금	일반적 형평성	6개중 5개 사 례, 비유의적 대학생
Hite(1988)	시물레이션, 자진신고 방법	조세구조, 소득, 세율에 관한 공평	유의적

## 제3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조세 공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세 자체가 지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납세자들이 조세에 관한 인식도를 설문지를 통해 연구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극소수의 논문만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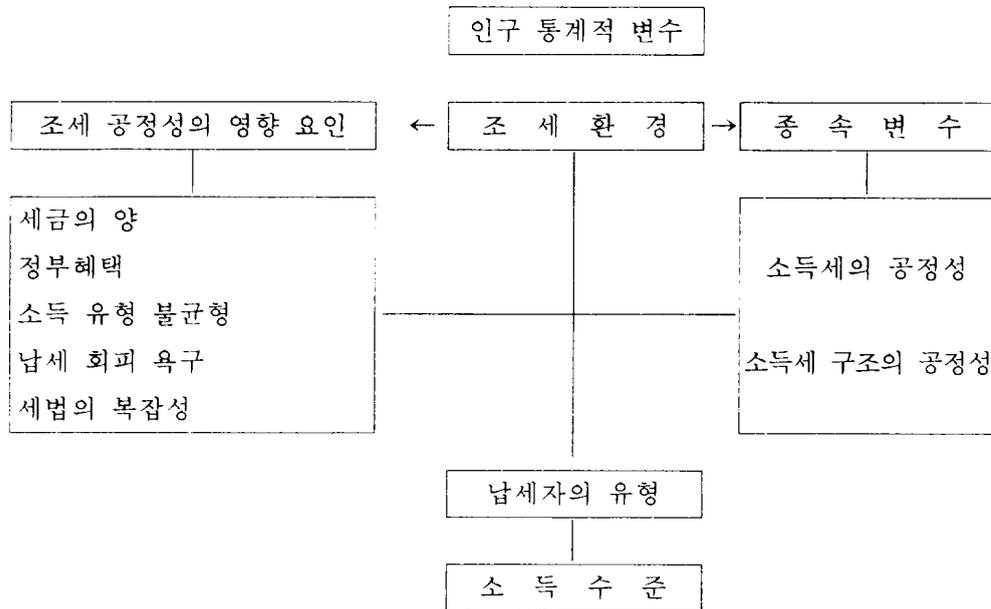
조세 공정성 인식을 측정함에 있어서 조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공정성 이론을 기초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조세 공정성에의 영향 요인 중 본 연구자가 제주지역 실정에서 가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요인만을 찾아 변수로써 표현한 것이다.

####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조세공정성 영향요인의 인지도와의 관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소득세의 공정성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조세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의 공정성 및 소득세 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적 특성별 조세 공정성 영향요인인 소득세의 공정성 및 소득세 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그림3-1〉 연구모형



##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조세공평성 변수를 이용하여 납세자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공평성 있는 조세구조의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연구의 설계를 위해 공평성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 연구인 홍학표와 변용환, 권영모의 문항변수 등을 참조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문항변수의 선정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하고 최종 27개의 변수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과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를 설문지로 구성하여 제주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세금을 실제 납부한 경험이 있는 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세금의 양, 소득유형 불균형, 납세회피 욕구, 세법 복잡성, 정부혜택 등 5개이고 종속변수로는 소득세의 공정성과 소득구조의 공정성을 선정한 후 4개 가설을 설정 하였다.

### 3. 변수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

국가 살림에 관련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납세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소득세가 유일한 세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소득세에 한정하여 전반적인 인식이 출발되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써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 실제 현상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리 개념적 정의가 내려진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제현상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현상적, 구체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 즉 구성을 실제현상에서 측정가능하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서 조세구조의 공정성을 인지할 때는 수많은 경제사회적 기준들이 고려되어지는데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공정성 인식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 1) 세금의 양

가처분소득(원래의 소득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뺀 납세후 소득)과 납세자가 이러한 소득에 비해 납부한 소득세 납부액을 말한다.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고려되어서 공정성이 설명되어지려면 소득액, 소득원의 종류, 나이, 부양가족수, 사회적 위치 등 많은 현실적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효과도 포함이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분석해야 할 속성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세자를 실험대상으로 한 연구가 조세 공정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2) 세법의 복잡성

납세자들은 복잡성과 불공평성 인식을 동일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복잡성은 실제로 조세구조가 공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수입료를 지급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조세회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차별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계층(고소득 납세자 집단)에게 복잡성이 유리하게 인식되어질 경우 이것은 또한 수직적공평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복잡성은 조세회피에 대한 차별적 기회를 준다고 말할 수 있다.

### 3) 정부 혜택

정부로부터의 혜택은 공공재 및 소속감 같은 정신적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세금납부는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적 시장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도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계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과 같은 정부보조금을 비롯하여 납세자의 세금 납부 댓가로 정부가 주는 효익으로써 정부와 납세자와의 관계를 거래관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정부와의 교환관계에서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 각 국민들 간의 공평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거래에 참여한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래방법과 다른 참가자의 거래방식 사이에 공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좌절감 또는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 4) 세금의 공평성(조세의 절대적 수준)

세금의 양과 같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인식되어질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공평성의 측정 수단으로 상당히 이용되어 왔으며, 실제로 공평성의 차원인가 아니면 단순히 불만족에 대한 차원인가의 문제로 여기에는 조세에 대한 납세의식과 정부혜택 등 다른 변수들과 관련이 되어질 수 있다.

### 5) 조세구조 공평성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노력한 자와 그렇지 않은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

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분담시키는 방법이다.

#### 6) 누진세율

누진세율 구조는 평등기준을 정당화 시키는 기준으로 개인마다 능력 및 노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이 유발되는 것을 반대하고 납세후 가처분 소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슷할 수록 좋다는 개념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 7) 지급능력 원칙

공헌기준이라고도 하며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능력 및 노력에 상응하여 납세후 소득이 상당한 차이가 나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원칙이다.



#### 4. 변수의 명칭

변 수	변 수 내 용
1	세금의 양
2	업종간 세금의 양
3	대인간 세금의 양
4	하류층에 대한 인식
5	조세구조의 공평성
6	조세구조의 공평성
7	세원별 차등과세
8	세금의 과세
9	세금의 공평성 인식
10	조세제도의 허점
11	세법의 보다나은 변경
12	정부지출의 중요성
13	누진세율(수직적 공평)
14	누진세율(수직적 공평)
15	정부혜택
16	정부혜택
17	지불능력
18	혜택기준보다 지불능력
19	세법의 이해하기 어려움
20	절세의 방법상의 인식
21	지급능력(차등과세)
22	세법의 복잡성
23	세무당국의 정책
24	업종간의 차등과세
25	공평성의 납세의욕
26	불공평시 조세회피
27	조세회피의 정당화

## 제 2 절 연구가설의 체계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나 조세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정도로 느끼고 있을 것이며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조세회피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소득세 납세자들의 납세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수집하는 어려움이 있어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가설 4개를 설정하였다.

가설1 :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조세공정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지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2 :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소득세의 공정성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영향을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3 : 소득세공정성의 영향 요인이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4 : 인구 통계학적 변수별로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 제 3 절 연구조사방법의 선택과 절차

#### 1. 조사기간과 그 절차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기간은 1997년 09월 19일에서 1997년 10월 7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지 회수방법은 직접 방문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개인소득이 있고 소득세 납부 경험이 있는 자 및 세법 또는 세무 회계를 수강하고 소득세에 대한 지식수준이 있는 일부 학생(납세 경험이 있는 야간강좌부 학생)도 함께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실제 분석에 이용된 조사대상은 107명이었다.

〈표 3-1〉 설문지 회수현황

배 포 수	회 수 부 수	무효 응답수	유효 응답수
200	158	51	107

#### 2. 분석 기 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설문지에 의한 가설검증 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자료 처리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ethod)의 통계기법을 개인용 컴퓨터 통계 패키지 인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 4 장 가설검증 및 결과해석

### 제 1 절 조세 공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인지도

#### 1. 〈가설 I〉의 검증 결과

조세공정성 영향요인의 인지도의 차이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계없이 산술평균치를 보면 세금의 양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5517로 비교적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2.5888로 정부혜택을 낮게 인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유형불균형의 정도는 3.9715로 불균형 정도를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의 납세회피 욕구는 2.9181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9288로 세법을 상당히 난해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통계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가설 I〉을 검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설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의 인지도는 다를 것이다.

#### 1) 연령과 조세공정성 영향요인과의 관계

연령별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간 차이를 보면 〈표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정부혜택, 소득유형불균형, 납세회피욕구, 세법의 복잡성등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금의 양에 대한 인지도는 0.0059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30세 이하의 집단은 세금의 양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3.2677이고, 31-40세의 집단은 3.9268, 41세 이상의 집단은 3.9259로 나타났다. 30대 이상의 집단이 그 미만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양을 많이 지각하고 있다.

〈표4-1〉 연령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연 령			자 유 도	F-value	Sig
	30세이하	31~40세	41세이상			
세금의 양	3.2677	3.9268	3.9259	2/113	5.3738	0.0059
정부혜택	2.6148	2.5608	2.5278	2/104	0.1630	0.8498
소득유형 불균형	3.9602	3.9756	4.0370	2/114	0.0429	0.9580
납세회피의 욕구	2.8358	3.0875	2.778	2/113	0.7143	0.4917
세법의 복잡성	3.9851	3.8862	3.7037	2/114	0.5661	0.5693

2) 납세전 소득수준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

납세전 소득수준별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간 차이를 보면 〈표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소득유형 불균형, 납세회피욕구, 세법의 복잡성등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금의 양에 대한 인지도는 0.0000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1천만원 미만의 집단은 세금의 양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2.8021이고, 1천만원 이상의 집단은 3.8642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미만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양을 많이 지각하고 있다 또한 정부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0.0215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1천만원 미만의 집단은 정부혜택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2.7833이고, 1천만원 이상의 집단은 2.5034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정부혜택에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천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미만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덜 받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4-2〉 납세전 소득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납세전 소득		자 유 도	F-value	Sig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세금의 양	2.8021	3.8642	1/111	25.1150	0.0000
정부혜택	2.7833	2.5034	1/102	5.4557	0.0215
소득유형 불균형	3.9596	3.9959	1/112	0.0559	0.8135
납세회피의 욕구	2.6667	3.0625	1/111	3.0093	0.0856
세법의 복잡성	3.8182	3.9794	1/112	0.9242	0.3384

### 3) 직업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

직업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의 양, 정부혜택, 납세회피의 욕구, 세법의 복잡성 등에서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세금의 양은 0.0022, 정부혜택은 0.0514, 납세회피의 욕구는 0.0295, 세법의 복잡성은 0.0287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의 양과의 관계를 보면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정부혜택의 측면에서는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혜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납세회피의 욕구의 경우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공무원(공사 포함)에 비해 납세회피의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세법의 복잡성면에서는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세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3> 직업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근 무 처		자유도	F-value	Sig
	공 기업	사 기업			
세금의 양	3.2634	3.8931	1/113	9.7813	0.0022
정부혜택	2.6875	2.4750	1/104	3.8842	0.0514
소득유형 불균형	3.9735	3.9560	1/114	0.0160	0.8995
납세회피의 욕구	2.7177	3.1698	1/113	4.8598	0.0295
세법의 복잡성	3.7778	4.1069	1/114	4.9105	0.0287

### 4) 납세경험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

납세경험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표4-4>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혜택, 소득유형불균형, 납세회피의 욕구, 세법의 복잡성 등은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세금의 양만이 0.0013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납부하는 세금의 양에 대해서는 납세경험이 오래될수록 많이 인지하고 있다.

〈표4-4〉 납세경험과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 지 도	근 무 년 수				자유도	F-value	Sig
	1~5년	5~10년	10~15년	15년이상			
세금의 양	3.2436	3.5285	4.0833	4.5152	3/112	5.6025	0.0013
정부혜택	2.5957	2.7105	2.3182	2.4091	3/103	1.8856	0.1367
소득유형 불균형	3.8365	4.0650	4.2500	3.9697	3/113	1.3832	0.2516
납세회피의 욕구	2.8942	2.8659	2.8750	3.2727	3/112	0.4099	0.7462
세법의 복잡성	3.9748	3.8699	3.8611	4.0000	3/113	0.1831	0.9077

5) 세무지식과 인지도간 차이분석

세무지식과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혜택, 소득유형불균형, 납세회피욕구, 세금의 양 등은 세무지식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법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0.003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행 시행되고 있는 세법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5〉 세무지식과 인지도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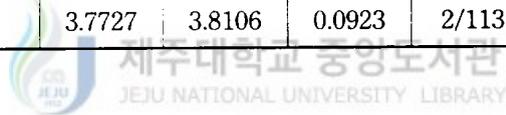
영향요인의 인지도	세 무 지 식			자 유 도	F-value	Sig
	매우 잘알	보 통	전혀모름			
세금의 양	3.6667	3.7852	3.3750	2/113	1.8644	0.1597
정부혜택	2.6667	2.6802	2.5129	2/104	1.1702	0.3144
소득유형 불균형	4.4286	3.8741	3.9897	2/114	1.7635	0.1761
납세회피의 욕구	2.7143	2.8636	2.9769	2/113	0.2574	0.7735
세법의 복잡성	3.1905	3.7704	4.1179	2/114	6.0725	0.0031

6) 세법준수 여부와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

세법준수 여부에 따른 조세공정성 영향요인간의 차이를 <표4-6>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영향 요인 중 정부혜택만이 0.0414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납세자들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여부에 따라 세법을 준수하는 의식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

<표4-6> 세법준수와 영향요인의 인지도간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준 수 여 부			자 유 도	F-value	Sig
	잘지킴	보 통	안지킴			
세금의 양	3.3030	3.5455	3.6803	2/112	0.8692	0.4211
정부혜택	2.7857	2.6524	2.4375	2/103	3.2847	0.0414
소득유형 불균형	3.8333	3.9545	4.0667	2/113	0.8014	0.4512
납세회피의 욕구	2.6667	2.8409	3.1300	2/112	1.5780	0.2109
세법의 복잡성	3.7727	3.8106	0.0923	2/113	1.9410	0.1483



## 제 2 절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

### 1. (가설 II)의 검증 결과

인구통계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4426으로 보통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세 구조의 공정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면, 세금을 추정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통계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가설 II)을 검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소득세의 공정성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는 다를 것이다.

1) 납세전 소득수준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납세전 소득수준별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간의 관계를 보면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에서 0.0058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이 1천만원 이상의 집단간에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집단의 평균은 2.4844인 반면 1천만원 이상의 집단의 평균은 1.9815로 나타나 1천만원이상의 납세전 소득집단이 소득세 추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4-7> 납세전 소득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납세전 소득		자 유 도	F-value	Sig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소득세의 공정성	3.5657	3.4104	1/111	2.1230	0.1479
소득구조의 공정성	2.4844	1.9815	1/111	7.9043	0.0058

2) 직업과 소득세 및 소득 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근무처별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간의 관계를 <표4-8>에서 보면 소득세의 공정성에서는 0.0285의 유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기업 납세자의 경우보다 공기업 납세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구조 공정성의 관계에서는 0.005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집단에서가 좀 더 소득구조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8> 직업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근 무 처		자 유 도	F-value	Sig
	공 기 업	사 기 업			
소득세의 공정성	3.5484	3.3365	1/113	4.9254	0.0285
소득구조의 공정성	2.3387	1.8868	1/113	8.0214	0.0055

3) 세무지식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간 관계

세무지식별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간의 관계를 보면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의 공정성의 관계에서 0.037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소득구조 공정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4-9> 세무지식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차이분석

영향요인의 인지도	세 무 지 식			자 유 도	F-value	Sig
	매우 잘알	보 통	전혀모름			
소득세의 공정성	3.7857	3.3222	3.5078	2/113	3.3802	0.0375
소득구조의 공정성	1.7143	2.1111	2.2031	2/113	1.0109	0.3672

### 제 3 절 조세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 1. [가설 Ⅲ]의 검증결과

[가설 Ⅲ]은 세금의 양, 정부혜택수준, 소득유형 불균형, 납세회피욕구, 세법의 복잡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소득세의 공정성, 소득구조의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검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3) 소득세 공정성의 영향요인이 소득세의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 1)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세의 공정성과의 관계

전술한 5가지의 독립변수와 소득세의 공정성간의 다중회귀분석(stepwise방식)한 결과는 <표4-10>으로 나타났다. 즉 세금의 양의 경우 6%의 설명력과 0.0110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負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득유형불균형은 6.7%의 설명력과 0.0059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正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득세의 납세량이 적을수록 소득세에 대한 공정성의 인지도가 높고, 소득유형 불균형 정도가 낮을수록 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납세자들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0>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소득세의 공정성	1	세금의 양	-0.10923	0.04218	-0.24610	0.06057	-2.589	0.0110
	2	소득유형 불균형	0.17709	0.06303	0.25908	0.12744	2.810	0.0059
상수		3.85487	3.17398	F-value	7.52165	Sig.F	0.0009	

2)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소득세 공정성의 영향요인과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보면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의 양의 경우 16.8%의 설명력과 0.0000의 유의수준에서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세금의 양의 적을수록 소득구조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정부혜택의 경우 5%의 설명력과 0.0113의 유의수준에서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정부혜택이 클수록 소득구조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4-11>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소득구조 의 공정성	1	세금의 양	-0.31830	0.06910	-0.41004	0.16813	-4.607	0.0000
	2	정부혜택	0.36775	0.14251	0.23543	0.21819	2.580	0.1113
상수		3.26113	2.10287	F-value	14.51206	Sig.F	0.0000	



## 제 4 절 변수별 영향요인과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

### 1. [가설 IV]의 검증 결과

[가설 IV]는 전술한 5가지 영향요인과 2가지 종속변수간에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4)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공정성이 영향요인의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 1) 학력별 소득세 공정성의 영향요인이 소득세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력별 소득세 공정성의 영향요인과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보면 <표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사원의 경우 소득유형불균형만이 소득세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졸이상의 집단의 경우 세금의 양과 세법의 복잡성이 소득세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사원의 경우 10.5%의 설명력과 0.0475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유형불균형이 소득세의 공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고졸사원의 경우 소득유형불균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세금의 양이 13.2%의 설명력과 0.0025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세법의 복잡성이 5.2%의 설명력과 0.0484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졸사원의 경우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세법이 다소 복잡할수록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표4-12〉 학력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 력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고 졸	1	소득유형	0.21885	0.10663	0.32365	0.10475	2.052	0.0475
		불 균 형						
상수 2.55552			F-value 4.21207		Sig.F 0.0475			
대졸	1	세금의 양	-0.16495	0.05250	-0.36313	0.13186	-3.142	0.0025
이상	2	세법의 복잡성	0.13827	0.06870	0.22973	0.18353	2.013	0.0484
상수 4.08329			3.61002		F-value 7.19322		Sig.F 0.0015	

2) 납세경험별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납세경험별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보면 〈표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미만의 납세자의 경우 세금의 양만이 소득세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5년이상 납세자의 경우 소득유형 불균형과 정부혜택이 소득세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납세년수 5년 미만 집단의 경우 8%의 설명력과 0.0436의 유의수준에서 세금의 양이 소득세의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납세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은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5년이상 납세경험자의 경우 소득유형불균형은 15.9%의 설명력과 0.0216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공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득불균형이 적을수록 조세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혜택에 있어서는 혜택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세공정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13〉 납세경험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납세년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sup>1</sup>	$\beta$	R <sup>2</sup>	T-value	Sig
5년미만	1	세금의 양	-0.13001	0.06270	-2.8951	0.08382	-2.074	0.0436
		상수	3.94241					
				F-value	4.29976			Sig.F 0.0436
5년이상	1	소득유형 불균형	0.26764	0.11058	0.39865	0.15892	2.2420	0.0216
	2	정부혜택	0.36449	0.14576	0.38447	0.30400	2.501	0.0181
		상수	2.34090					
				3.16576	F-value	6.55161		Sig.F 0.0044

3) 납세전 소득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소득자의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4-14〉에서 보면, 납세전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의 양과 정부의 혜택 등이 소득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혜택이 클수록 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의 양의 경우 12%의 설명력과 0.0019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혜택에 있어서는 5% 설명력과 0.0432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4-14〉 고소득자의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정도

납세년수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1천만원	1	세금의 양	-0.30981	0.09624	-3.5689	0.12737	-3.219	0.0019
이상	2	정부혜택	0.32355	0.15715	0.22841	0.17720	2.059	0.0432
		상수	3.17029					
				2.19411	F-value	7.53755		Sig.F 0.0011

4) 학력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력별 소득세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4-15>에서 살펴보면 고졸 납세자인 경우 세법의 복잡성만이 소득세 구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졸 납세자인 경우 세금의 양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납세자의 경우 22.3% 설명력과 0.0027의 유의수준에서 세법의 복잡성이 소득세 구조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현행세법에 대해서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의 납세자의 경우 세금의 양이 18.5%의 설명력과 0.0002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금의 양이 적을 수록 소득세 구조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5> 학력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 력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고 졸	1	세법의 복잡성	-0.67463	0.20943	-0.47303	0.22376	-3.221	0.0027
상수 4.90709						F-value 10.37730	Sig.F 0.0027	
대 졸	1	세금의 양	-0.34019	0.08776	-0.43064	0.18545	-3.876	0.0002
상수 3.33463						F-value 15.02643	Sig.F 0.0002	

5) 세무지식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지식별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4-16>에서 살펴보면 세무지식의 정도가 높을 경우는 세법의 복잡성, 소득유형 불균형, 세금의 양 등에서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무지식의 정도가 낮을 경우는 정부혜택, 세금의 양, 소득유형불균형 등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무지식의 높을 경우 세법의 복잡성은 68%의 설명력과 0.0449의 유의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소득유형 불균형은 39%의 설명력

과 0.0179의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금의 양에서는 3.7%의 설명력과 0.0167의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세무지식의 정도가 낮을 경우는 정부혜택은 23.3%의 설명력과 0.0001의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금의 양에서는 9.2%의 설명력과 0.0083의 유의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소득유형 불균형에서의 설명력은 4.8%이고 유의수준은 0.0450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4-16〉 세무지식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조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 력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매우잘알	1	세 법 의 복 잡 성	-0.46584	0.16157	-0.82166	0.67513	-2.883	0.0449
	2	소 득 유 형 불 균 형	0.88196	0.18628	0.53791	0.96165	4.735	0.0179
	3	세 금 의 양	0.16574	0.02168	0.19311	0.99873	7.644	0.0167
상수		3.16770	-0.80205	-1.29394	F-value	524.61992	Sig.F	0.0019
전혀모름	1	정 부 혜 택	0.75764	0.18357	0.48294	0.23323	4.127	0.0001
	2	세 금 의 양	-0.24227	0.08853	-0.32064	0.32513	-2.737	0.0083
	3	소 득 유 형 불 균 형	-0.28326	0.13803	-0.22455	0.37396	-2.052	0.0450
상수		0.26853	1.50461	2.77589	F-value	10.75211	Sig.F	0.0000

6) 세법준수 정도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세법 준수 정도별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4-17〉에서 살펴보면 세법을 준수하는 정도가 높을때는 세금의 양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의 경우 세법의 복잡성과 정부혜택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법준수 정도가 높을 경우는 세금의 양은 22.5%의 설명력과 0.0347의 유의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법준수 정도가 낮을 경우는 세법의 복잡성은 20.1%의 설명력과 0.0021의 유의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정부혜택은 30.3%의 설명력과 0.0204의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7〉 세법 준수 정도별 공정성 영향요인의 소득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 력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매우 잘 지킴	1	세금의 양	-0.48364	0.21167	-0.47417	0.22484	-2.285	0.0347
	상수		3.88715	F-value	5.22094	Sig.F	0.0347	
전혀 안지켜짐	1	세 법 의 복 잡 성	-0.53469	0.16271	-0.45225	0.20453	-3.286	0.0021
	2	정 부 혜 택	0.48123	0.19943	0.33257	0.30345	2.413	0.0204
상수		4.15486	2.45325	F-value	8.93092	Sig.F	0.0006	

7) 납세경험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납세경험별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세 구조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미만의 납세자의 경우 세금의 양, 세법의 복잡성, 납세회피욕구 등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5년 이상 10년이하의 납세자의 경우는 납세회피 욕구만이, 10년이상의 납세집단의 경우는 세금의 양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년이하 납세 경험 집단의 경우 세금의 양에서는 14%의 설명력과 0.0081의 유의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나타내고, 세법의 복잡성은 8%의 설명력과 0.0363의 유의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납세 회피욕구는 9%의 설

명력과 0.0270의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5-10년이하의 납세자의 경우는 12%의 설명력과 0.0432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10년이상 납세자의 경우는 82%의 설명력과 0.0007의 유의수준에서 소득세 공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통적인 인식의 바탕은 세금의 양이 적고, 세법이 복잡할수록 소득세 구조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표4-18〉 납세경험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조세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학 력	단계	독립변수	회귀변수	표준오차	$\beta$	R <sup>2</sup>	T-value	Sig
5년미만	1	세금의 양	-0.29836	0.10790	-0.37405	0.13991	-2.765	0.0081
	2	세법의 복잡성	-0.34039	0.15788	-0.28322	0.21885	-2.156	0.0363
	3	납세회피 욕구	0.24767	0.10831	0.28755	0.30017	2.287	0.270
상수		3.25176	4.49466	3.94164	F-value	6.43389	Sig.F	0.0010
5~10년	1	납세회피 욕구	-0.23372	0.11100	-0.34884	0.12169	-2.106	0.0432
상수		2.66089	F-value		4.43592	Sig.F		0.0432
10년이상	1	세금의 양	-0.75556	0.12985	-0.91032	0.82867	-5.819	0.0007
상수		4.74321	F-value		33.85774	Sig.F		0.0007

## 제 5 장 結 論

납세자의 조세구조에 대한 인식을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납세자의 행동적 효과가 반영되어진 조세 시스템의 공정성있는 운용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성실 납세를 고양시키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기준은 사회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집단별로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사고하에 다수가 동의하는 조세구조의 운영은 국가의 커다란 편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이 조세 공정성 인식에 관한 5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소득세의 공정성, 소득구조의 공정성 2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개 환경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선정되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4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공정성 영향요인의 인지도의 차이는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계없이 산술평균치를 보면 세금의 양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5517로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으나 정부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2.5888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세법 준수여부와 조세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정부혜택만이 0.0414의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도도 3.92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직업과 조세 공정성의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금의 양, 세법의 복잡성, 납세회피의 욕구등은  $\alpha < 0.05$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구통계적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3.4426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조세구조의 공정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납세전 소득수준별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는 0.058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근무처별 소득세 및 소득구조의 공정성과의 관계는 각각 0.0285와 0.005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가 좀더 소득구조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과 소득세의 공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금의 양의 경우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득유형불균형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득세의 납세량의 적을수록 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납세자들의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혜택의 경우 0.0113의 유의수준에서 소득구조의 공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정부혜택이 클수록 소득구조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넷째, 학력별 소득세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세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인 경우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세법이 다소 복잡할수록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고졸집단의 경우는 소득유형불균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소득세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 경험별 조세 공정성의 영향요인과 소득세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계를 보면 5년미만의 납세자의 경우 세금의 양만이 소득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5년이상 납세자의 경우 소득유형 불균형과 정부혜택이 소득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법준수 정도별 공정성 영향요인이 소득에 구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을 준수하는 정도가 높을 때는 세금의 양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법의 복잡성과 정부혜택이 소득세 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 (1)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방법이 갖는 질적 변수 측정의 한계
- (2) 표본을 제주지역에만 국한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성격 문제
- (3) 연구모형에서 사회.문화적인 개개인의 특성을 변수로써 고려하지 못한 일  
반화의 한계
- (4) 납세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근거로 하여 조세구조가 공정한가에 대한 판단하는 경향의 한계로 인한  
납세자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정의기준 도출의 어려움
- (5) 시대적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  
를 하였다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 내 문 헌〉

-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 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1994.
- 변용환, “조세정의에 대한 지배적 인식기준”, 「경영학연구」, 1990, 10.
- 선병완, 세무회계원론, 무역경영사, 1994.
- 설성진, 기업도산예측모델의 정립과 적응성 검토(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회계학논총 제3호, 호남회계학회, 1992.12.
- 송쌍중, 「세무회계론」, 조세통람사, 1993.
- 신형환, “조세회피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오재선, “조세부담 공평의 원리에 관한 고찰”, 세무대학 논문집, 1992.
- 유한성, 「재정학개론」, 삼영사 1990.
- 이재울, “분배적 정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 이준규, “평균 유효세율에 의한 법인세법 특례규정의 유효성”, 「세무학연구」, 1992. 6, vol. 13.
-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92.
- 이필우, “조세부담과 과세의 한계 : 그 사회심리적 이해를위하여”, 「한국조세연구」, 제1권, 세경사, 1985, pp.19-49.
- 진태영, “조세회피 관련요소에 관한 행동적 연구”, 「경영학 연구」, 제21권, 제2호, 1992.5.
- 정진수, 현대회계이론, 법문사, 1993.
- 최 광, “탈세의 결정요인과 영향”, 「한국조세연구」, 제3권, 세경사, 1987, pp.116-162,
- 홍학표, “납세자의 조세저항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국 외 문 헌〉

- Alexander, S. & M. Ruderman, "The Role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s", *Social Justice Research*, 1987, pp.117~198.
- Arrington, C.E., & Reckers, P.M.J. A social~Psychological Investigation into Perceptions of Tax Evasion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15(59), 1985 pp.163~176.
- B. Bradley , The fair tax. NEW York : Pocket Books 1984.
- Chua, Wai F., "Radical Developments in Accounting Thought", *The Accounting Review*. Oct., 1986, pp.601~632.
- Crumbly, d. Larry, "Behavioral Implication of Taxation", *The Accounting Review* Oct., 1973, pp.759~763.
- Etzoni, A., "Tax Evasion and Perceptions of Tax Fairnes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2, 1986, pp.177~185.
- Greenberg, J., "Protestant Ethic Endorsement and the Fairness of Equity Inpu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1979, pp.81~90.
- Madeo, S.A.A. Schepanski and W.C.Uecker, "Modeling Judgment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Vol, No.2, april, 1987, pp.323~342.
- Milliron, V.C.,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3, No. 2, Autumn, 1985, pp.794~816.
- Porcano, T.M.,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Vol. 59, No.4, Oct, 1984, pp.619~636.
- Spicer, M. W. Civilization at a discount :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9(1) 1986, pp.13~20.
- Swieringa, R. R. J. & K. E. Weick, "An assessment of Laboratory Experiment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0 supplement, 1982, pp.56~101.
- White, R.A, "Employee Preferences for non~taxable Compensation Plan : An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 No.3, July, 1983, pp.539~560.

##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설문내용은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서는 조세공정성의 납세자 인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학술적인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은 본 연구의 생명이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전산처리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공란이 없이 적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허 정 근

▣ 아래 사항을 읽고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적다 보통이다 너무많다

I ——— I ——— I

1. 귀하가 지난해 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양은? ( ) ( ) ( ) ( ) ( )
2. 다른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납부세액과 비교해서 귀하가 납부한 소득세액은? ( ) ( ) ( ) ( ) ( )
3. 귀하와 동일한 소득금액을 획득한 자와 비교할 때 귀하가 납부한 소득세액은? ( ) ( ) ( ) ( ) ( )
4.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납부한 총 소득세액은? ( ) ( ) ( ) ( ) ( )

매우공정 보통이다 너무불공정

I ——— I ——— I

5. 소득세 시스템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은? ( ) ( ) ( ) ( ) ( )
6.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소득세 시스템은? ( ) ( ) ( ) ( ) (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그렇지 않다

I ——— I ——— I

7. 공평성이란 임금, 이자 및 투자소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 ( ) ( ) ( ) ( )
8. 전반적으로 소득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 ( ) ( ) ( ) ( ) ( )
9.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공평한 세금이라 느낀다. ( ) ( ) ( ) ( ) ( )
10. 현행 조세제도는 탈세의 구실을 주고 있다. ( ) ( ) ( ) ( ) ( )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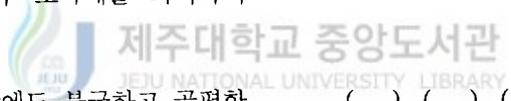
I ——— I ——— I

11. 세법이 더 공정하게 바뀐다면 개인적으로 받고있는 소득세 규정혜택도 포기하겠다. ( ) ( ) ( ) ( ) ( )
12. 정부지출 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 ) ( ) ( ) ( ) ( )
13.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입하는 것이 공평하다. ( ) ( ) ( ) ( ) ( )
14. 고소득 납세자는 저소득 납세자보다 소득세 납부능력이 크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 ( ) ( ) ( ) ( ) ( )
15. 정부혜택에 비해 귀하의 소득세액은 공평하다. ( ) ( ) ( ) ( ) ( )
16. 내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 ( ) ( ) ( ) ( )
17. 세금은 지불능력(소득)에 따라 부과 되어야 한다. ( ) ( ) ( ) ( ) ( )
18.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지불능력(소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 ( ) ( ) ( ) ( )
19. 현행세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 ) ( ) ( ) ( ) ( )
20. 소득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세무사)를 수임할 수 있는 특정인만이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법률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 ( ) ( ) ( ) ( )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그렇지 않다

I ——— I ——— I

21. 특별한 환경에 처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위해서는 세법의 특례 규정(필요경비적 공제, 소득공제 등)은 필요하다. ( ) ( ) ( ) ( ) ( )
22. 소득세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23. 세무당국은 세법을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 ( ) ( ) ( ) ( ) ( )
24. 자영업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 ) ( ) ( ) ( ) ( )
25. 조세시스템의 공평성 여부는 납세자의 납세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 ) ( ) ( ) ( ) ( )
26. 조세시스템의 공평성에 어긋나게 자신에게 적용될 경우 소득세를 회피하여도 된다. ( ) ( ) ( ) ( ) ( )
27. 정부의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혜택의 몫을 받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가 정당화 된다. ( ) ( ) ( ) ( ) ( )
28. 귀하의 성은? 남( ) 여( )
29. 결혼여부는? 예( ) 아니오( )
30. 귀하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제외) ( )명
31. 귀하의 연령은?  
가. 20세 이하( ) 나. 21~30세( )  
다. 31~40세( ) 라. 41~50세( )  
마. 51세 이상( )



32. 귀하의 지난해 연간 납세전 소득(또는 연말정산서상의 소득)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구조의 4단계 누진세율 예시임)

가. 1천만원 이하 ( )

나. 1천~4천만원이하 ( )

다. 4천~8천만원이하 ( )

라. 8천만원초과 ( )

33. 귀하의 최종학력은?

가. 중졸 이하( ) 나. 고졸( )

다. 대졸( ) 라. 대학원졸( )

34. 귀하의 직업은?

가.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 ( )

나. 자영업 ( )

35. 근로소득자라면 귀하의 직장은?

가. 공기업( ) 나. 사기업( )

36. 귀하가 업종에 종사한 연수는?

가. 1~5년 ( ) 나. 5~10년( )

다. 10~15년 ( ) 라. 15년이상( )

37. 귀하는 소득세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 세무전문가 사무실을 이용( )

나.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다. 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아는바 없다.( )

라. 기타( )

38. 귀하의 우리나라 세무에 관련한 지식은 어느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00%	75%	50%	25%	0%
매우 잘알				전혀모름

39. 귀하는 우리나라 세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0%	75%	50%	25%	0%
매우 잘지킴				전혀 안지켜짐

40. 귀하는 납세경험이 있다면 몇년이나 됩니까? ( )

가. 1~5년 ( ) 나. 5~10년( ) 다. 10~15년 ( ) 라. 15년이상( )

41. 세율조정에 따라서 작년도 납부한 세금액과 재작년도 납부한 세금의 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많다. ( )

나.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적다. ( )

다. 잘 모르겠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